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53호)

o '96. 5. 22.

o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6. 5. 2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6. 5. 7.
- 다. 상정일자 : '96. 5. 20.
- 라. 위원회개최 : 제53회 임시회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2차회의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박우원)

가. 제안이유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할 경우에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편의 도모의 확대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제2조에 “5. 법 제18조 및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동장도 가능)”을 신설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18조
- 2) 예산조치 : 없음
- 3) 합의 : 내무부지침 (주민 13210-122<'96.2.2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 충빈)

가. 검토내용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교부는 현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민원인이 원활 경우 구청장도 발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임.

나. 검토결과

1)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의 확대는 바람직함.

2) 개정안의 검토의견

(1) 조례체제상 근거법인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을 해당조문에 명기

현 행	검 토 의 견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근거법명 을 조문에 연용함.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5.9.22>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2조(권한의 위임) ----- 1.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 시행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2. (현행과 같음) 3. () 4. ()	근거법 시 행령의 명 시

(2) 오탈자 및 체제정리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p>제2조(권한의 위임) 구 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 장에게 위임한다.</p> <p>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신설</p>	<p>제2조(권한의 위임)</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u>5. 법 제18조 및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 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 본교부에 관한 사항(동 장도 가능)</u></p>	<p>제2조(권한의위임)①</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u>② 신청인이 구청장에 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 제18 조 및 영 제45조에 의 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와 및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 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은 동장에게 위임한다.</u></p>

- (3) 이유 : ①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교부한다고 되어 있음.
- ② 구청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구역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거주지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영제45조의3)

다. 관련법규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제1일차 : 96.5.20>

- 본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언제 개정되어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가?
→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96년 3월 주민등록개선업무지시로, 우리구에서는 95년 11월부터 기시행하고 있음.
-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왜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가? → 양재1동장의 명의로 발급하고 있음. 앞으로는 구청장 명의로 발급하고자 함.
- 왜 그때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는가? → 민원인 편의를 위해 양재1동의 회선을 구청에 설치, 동장명의로 발급하여 왔음. 그 사례가 내무부에서 우수사례로 채택,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 그 좋은 점을 우리가 조례화 왜 하지 않았는가? → 우리만 앞서서 하기는 곤란한 일임.
- 주민등록법에는 열람, 등초본 교부는 구청장 소관이 아닌가? →
- 조례 제출안대로 되면 어느부서에서 취급하며, 관인날인 명의는 →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하여, 직인에 “주민발급용”이라고 간인해서 사용하게 됨.
- 왜 양재1동으로 한 이유, 신구청 소재지 동이 아닌데? → 양재1동의 PC와 직원이 피견되어 발급하므로 자료의 착오등은 없으며 동장의 책임으로 발급해 왔음.
- 주전산기는 구청에 비치하여야 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해야? → 양재1동장 명의로 발급하자니 PC선을 끌어서 사용했을 뿐임. 서초구의 우수 사례를 보급하기 위한 것임.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토대로 제1조 (목적)에 근거법명 인용, 제2조(권한의 위임)에 시행령 명시하고 동조를 ①, ②로 구분하여 개정안 5호 신설을 제2항으로 신설하여 구청장이 발급하는 사항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수정동의안 발의 - 재청 - 표결보류동의안 - 만장일치로 가결
- 조례 제1조 및 제2조는 법규명 인용은 검토안대로 하고 제2조의 5호 신설은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로 하자는 수정동의안 발의 - 재청 - 만장일치로 가결

6. 수정안의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5. 22 총무재무위원장
- 나. 수정이유 : 제1조 (목적)에서 근거법명 인용
제2조 (권한의 위임)에서 5호 신설내용중 법체계상 일부 수정
- 다. 수정주요골자 :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수정가결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와 제45조의3에 염연히 구분된 내용을 한 조문에 열거한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 정리내용 : 수정안 반영